|  |  |  |
| --- | --- | --- |
| **동산저당등기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제88호<동산저당등기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표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 장모2016년7월5일제1조 동산저당 등기업무를 규범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며, 자금융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개인사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80조 제1관 제4항 및 제181조에서 규정한 동산으로 저당하는 경우, 저당자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등기기관”이라 약칭)에서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발효된 시점부터 설정되며, 등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본 방법에서 일컫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공상행정관리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을 포함한다. 제3조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및 말소는 저당계약 일방이 대표로 등기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저당계약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등기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 제출한 자료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될 경우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등기기관에 설정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4.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서>4.2 저당자 및 저당권자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4.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제5조 <동산저당등기서>에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5.1 저당자 및 저당권자 명칭(성명) 및 주소지 등 5.2 저당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소재지, 소유권 귀속 또는 사용권 귀속5.3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5.4 저당담보의 범위5.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5.6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서명 및 연락방식 등 5.7 저당자 및 저당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5.8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등기를 해야 한다고 인지한 기타 저당권 정보제6조 저당계약 변경 및 <동산저당등기서>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기존 등기기관에서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6.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변경서>6.2 저당자 및 저당권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6.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제7조 주채권 소멸, 담보물권 실현,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법률규정 담보물권이 소멸된 기타상황 시, 당사자는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기존 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7.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말소서>7.2 저당자 및 저당권자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7.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제8조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말소 처리 시, 제출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본 방법 형식요구에 부합할 경우 등기기관은 현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산저당등기말소서> 상에 동산저당등기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또한 날인일자를 표기한다.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말소 처리 시, 제출한 자료가 본 방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기관은 동산저당등기 전용인장이 날인된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사저당등기말소서>의 동산저당등기문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동산저당등기정보를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산저당등기말소서> 각 1식 3부는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각 1부씩 가지며, 등기기관이 1부를 보관한다. 제10조 유관단위와 개인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동산저당등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 신분증명문건을 지참하여 등기기관에서 동산저당등기문서를 열람 및 초록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가 등기기관의 동산저당등기정보와 그 제출 자료내용이 불일치하는 증거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기기관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등기기관이 그 등기된 동산저당등기정보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에 대해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거쳐, 등기기관은 인민법원 및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가 발효한 결정 등에 근거하여, 관련된 동산저당등기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동산저당등기변경 또는 취소 후 등기기관은 기존 저당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동산저당등기정보화 구축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인터넷 동산저당등기시스템 구축 및 동산저당등기 전자파일 설치 등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14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动产抵押登记办法**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8号　　《动产抵押登记办法》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修订通过，现予公布，自2016年9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6年7月5日 　　第一条 为规范动产抵押登记工作，保障交易安全，促进资金融通，根据《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企业、个体工商户、农业生产经营者以《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第一百八十条第一款第四项、第一百八十一条规定的动产抵押的，应当向抵押人住所地的县级工商行政管理部门（以下简称登记机关）办理登记。抵押权自抵押合同生效时设立；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本办法所称工商行政管理部门，包括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条 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和注销，可以由抵押合同一方作为代表到登记机关办理，也可以由抵押合同双方共同委托的代理人到登记机关办理。 　　当事人应当保证其提交的材料内容真实准确。 　　第四条 当事人设立抵押权符合本办法第二条所规定情形的，应当持下列文件向登记机关办理设立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五条 《动产抵押登记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抵押人、抵押权人名称（姓名）、住所地等； 　　（二）抵押财产的名称、数量、质量、状况、所在地、所有权归属或者使用权归属； 　　（三）被担保债权的种类和数额； 　　（四）抵押担保的范围； 　　（五）债务人履行债务的期限； 　　（六）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姓名、联系方式等； 　　（七）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 　　（八）抵押人、抵押权人认为其他应当登记的抵押权信息。 　　第六条 抵押合同变更、《动产抵押登记书》内容需要变更的，当事人应当持下列文件，向原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变更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七条 在主债权消灭、担保物权实现、债权人放弃担保物权或者法律规定担保物权消灭的其他情形下，当事人应当持下列文件，向原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注销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八条 当事人办理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注销，提交材料齐全，符合本办法形式要求的，登记机关应当当场予以办理，在当事人所提交的《动产抵押登记书》《动产抵押登记变更书》《动产抵押登记注销书》上加盖动产抵押登记专用章，并注明盖章日期。 　　当事人办理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注销，提交的材料不符合本办法规定的，登记机关不予办理，并应当向当事人告知理由。 　　第九条 登记机关应当根据加盖动产抵押登记专用章的《动产抵押登记书》《动产抵押登记变更书》《动产抵押登记注销书》设立动产抵押登记档案，并按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的规定，及时将动产抵押登记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动产抵押登记书》《动产抵押登记变更书》《动产抵押登记注销书》各一式三份，抵押人、抵押权人各持一份，登记机关留存一份。 　　第十条 有关单位和个人可以登录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查询有关动产抵押登记信息，也可以持合法身份证明文件，到登记机关查阅、抄录动产抵押登记档案。 　　第十一条 当事人有证据证明登记机关的动产抵押登记信息与其提交材料内容不一致的，有权要求登记机关予以更正。 　　登记机关发现其登记的动产抵押登记信息与当事人提交材料内容不一致的，应当对有关信息进行更正。 　　第十二条 经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登记机关可以根据人民法院、仲裁委员会生效的法律文书或者人民政府生效的决定等，对相关的动产抵押登记进行变更或者撤销。动产抵押登记变更或者撤销后，登记机关应当告知原抵押合同双方当事人。 　　第十三条 各地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积极推动动产抵押登记信息化建设工作，通过建立互联网动产抵押登记系统、设立动产抵押登记电子档案等方式，为当事人提供便利条件。 　　第十四条 本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五条 本办法自2016年9月1日起施行。　　 |